

2019년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 실시계획

요 약

■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9. 5.20.(월) ~ 5.31.(금) ▶ 10일간
- ※ 사전조사 : 2019. 5.13.(월) ~ 5.17.(금) ▶ 5일간
- 감사반 : 감사1팀장 등 13명
- ※ 지원인력 3명(환경 1명, 기계 1명, 전기 1명) ▶ 타부서 지원요청
- ※ 외부전문가 1명(하수도분야 기술사) ▶ 외부전문가인력풀 추천
- 감사범위 : 2017. 7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
- ※ 직전감사 : 2017. 6.12.(월) ~ 6.23.(금) ▶ 10일간

■ 감사방향

- 하수, 소각 등 부산환경공단 업무특성에 맞는 감사실시
- 법령·규정 위반 관행적 업무처리 근절

■ 결과조치

- 감사결과 지적 및 제도개선사항 신속 조치토록 통보
- 법령위반 관련자 엄중문책, 우수직원 발굴 표창, 사례전파



부산광역시

(청렴감사담당관)

목 차

◇ 2019년도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 실시계획	1
I. 감사 근거	1
II. 감사실시 개요	1
① 감사개요	1
② 감사방향	1
III. 세부 추진계획	2
① 감사 중점사항	2
② 사전조사 실시	2
③ 공개감사 실시	3
④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	3
⑤ 적극행정 면책심사제도 운영	4
⑥ 감사결과 조치	4
IV. 행정사항	4
【참고자료】	
1. 감사반원별 분장사무표	6
2. 공개감사 실시 안내	7
3. 시민감사요망사항 접수부	9
4. 감사참여 결과서	10
5. 적극행정 면책심사제도 신청 안내	11
6. 사전컨설팅 감사 홍보문안	12
7. 보도자료	13
8. 감사자료 제출 서식	별첨

2019년도 부산환경공단 종합감사 실시계획

I | 감사 근거 및 방향

① 감사근거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자체감사 계획의 수립·실시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3조(감독)
- 「부산광역시 행정 감사규칙」 제2조(적용범위), 제4조(감사계획의 수립)
- 부산광역시 “2019년도 감사·감찰계획”(2019. 1. 2.)

② 감사방향

-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▶ 「사전컨설팅」 추진
- 경영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 노력도
- 하수처리장, 소각 및 관로시설 운영실태
- 사전조사 실시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
- 공개감사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일자리 창출 등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유공 직원 시상 등

II | 감사개요

- 감사기간 : 2019. 5.20.(월) ~ 5.31.(금) ▶ 10일간
 - 사전조사 : 2019. 5.13.(월) ~ 5.17.(금) ▶ 5일간
- 감 사 반 : 감사1팀장 등 13명
 - 지원인력 3명(환경 1명, 기계 1명, 전기 1명) ▶ 타부서 지원요청
 - 외부전문가 1명(하수도분야 기술사) ▶ 외부전문가 인력풀 추천
- 감사범위 : 2017. 7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
 - 직전 종합감사 : 2017. 6.12.(월) ~ 6.23.(금) ▶ 10일간

Ⅲ 세부 추진계획

1] 감사 중점사항

- 부산환경공단 업무특성에 따른 감사실시
 -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실태
 - 쓰레기 소각장 등 청소시설 관리운영 실태
 - 환경신기술 보급 및 신·증설 처리장의 인수사항 적정여부
 - 인력·예산부분의 낭비요인 제거로 재무건전성 제고
 - 비리 개연성이 있는 개인별 업무행태 중심의 청렴감사
- 관행적·고의적인 분리발주 등 수의계약 남발사례
- 동일·반복 지적사례 ▶ 문책수준 상향 조치
 - 동일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지 않고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례
-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미조치 사례
 - 문책수준 상향 조치 및 감사활동 평가 반영
- 지역경제 활성화 미참여 사례 및 공사 등 발주 법령 준수 여부 등
 - 각종 물품·용역, 공사 등 계약 시 부산지역업체 및 녹색제품(구매) 계약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 외 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는 사례 등

2] 사전조사 실시

- 주요업무 및 집중감사 분야, 중점 점검사항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 등
- 사전조사기간 : 2019. 5.13.(월) ~ 5.17.(금) ▶ 5일간
- 기초자료 수집대상 분야
 - 중점감사분야 :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기전설비 운영실태 등
 - 주요업무분야 : 총무·인사, 예산·회계, 공사 분야 등

③ 공개감사 실시

□ 감사사항 예고

- 근거 : 「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규칙」 제7조(시민의견 등 수렴)
- 예고기간 : 2019. 4.29.(월)~ 5.10.(금) ▶ 10일간
- 예고내용 : 감사대상, 시민감사요망사항 제출요령, 결과통보 등
- 예고방법 : 市·부산환경공단 홈페이지 게시, 언론매체 등에 보도자료 제공

□ 시민 감사요망사항 접수

- 접수기간 : 2019. 4.29.(월)~ 5.10.(금) ▶ 10일간(토,일 제외)
- 접수처 : 市 청렴감사담당관, 부산환경공단 청렴감사실
- 접수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市 홈페이지, 접수처 직접방문 등
 - 인터넷 접수 : 市 홈페이지 “시민감사요망사항 의견접수”
 - 서면 접수 : 시민감사 요망사항 접수부에 기재
- 접수사항처리 : 소관분야 감사반원에게 분류, 감사실시
 - 가명·무기명 진정,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,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,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등은 제외
- 감사결과 조치
 - 감사 지적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(개선) 등 조치
 - 감사결과는 감사요망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

④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

- 근거 :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외부전문가 등의 참여)
- 기간 : 2019. 5.21.(화)~ 5.22.(수) ▶ 2일간
- 분야 : 하수관거 및 하수 처리분야 ▶ 외부전문가 인력풀 추천
 - 하수관거 개보수 설계·시공 적정여부
 - 하수차집시설, 맨홀 등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
- 인원 : 1명(하수도분야 기술사) ▶ 외부전문가 인력풀 추천

○ 활동 및 결과조치

- 감사참여 전문가가 적출한 위법 부당, 개선·수범사항은 감사 요원이 최종 정리
⇒ 전문가 의견 권고·제시
- 감사 참여 종료 시 감사 참여 결과서 작성 제출

5] 적극행정 면책심사제도 운영

- 신청권자 : 감사를 받은 직원 본인 및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
- 신청기간 : 감사결과 처분 이전(단,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)
- 면책요건 : 공익성, 타당성, 투명성 확보
- 면책대상 제외 사항
 - 금품을 수수한 경우
 - 고의.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 - 자의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위법.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
 - 그 밖에 위호에 준하는 위법.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- 감사기간 중 면책심사 상담창구 운영
 - 감사반장, 수감 직원 상담
 - 적극행정 면책 심사 대상여부 및 문책 양정 적정여부 상담

6] 감사결과 조치

-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은 해당기관(부서)에서 신속 조치토록 통보
-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는 제도개선, 무사안일·소극적 업무 처리 관련자 등은 엄중 문책
-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 발굴 표창 수여 및 사례전파